

의안번호	2209828
의 퇴 인	박홍배의원
회 답 일	2025.6.18.
추계번호	25B2385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 (정의)	“산림재난방지기관”이란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및 「자연공원법」 제4조에 따른 공원관리청(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 구역에서 발생하는 산림재난 방지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)을 말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2조 (정의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산림재난방지기관에 「자연공원법」 제4조¹⁾에 따른 공원관리청을 추가하여, 공원관리청이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, 산사

1) 제4조(자연공원의 지정 등)

- ① **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·관리**하고,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,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¹⁾이 각각 지정·관리하며, 군립공원은 군수가, 시립공원은 시장이,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·관리한다.
- ② **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·관리하는 환경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공원관리청”이라 한다)**은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, 생물자원, 경관의 현황·특성, 지형, 토지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.
- ③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- ④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태 등 산림재난에 한하여 예방·대비·대응 및 피해 복구(이하 “산림재난방지”)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

- 국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은 「자연공원법」 제4조에 따라 국립공원을 지정·관리하는 환경부장관과 같은 법 제80조²⁾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국립공원공단임
-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은 「산림보호법」 및 동법 시행령³⁾에 따른 산불유관기관 및 산사태유관기관으로서, 국립공원 내 탐방객 안전관리 및 산불, 산사태등 재해·재난 예방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
-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산불·산사태 유관기관으로서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의 산림재난방지 업무에 관한 권한과 범위가 제한적이므로, 국립공원 구역에서 발생하는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하여는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이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

□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구역에서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재 국립공원공단이 추진 중

2) 제8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

-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시·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군수는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공단, 시·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·위탁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.

3) 「산림보호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9. “산불유관기관”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2. “산사태유관기관”이란 산사태예방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
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

제2조(정의)

- ① 「산림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9호에서 “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 - 1. 「정부조직법」 제26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
 - 4. 국립공원공단, 한국전력공사,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
- ② 법 제2조제12호에서 “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 - 1. 국방부,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
 - 3.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관

인 재난관리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개정안의 시행으로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- 참고로,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국립공원공단의 재난관리 사업 수행을 위해 국립공원공단 출연금 345억 1백만원이 편성됨

[표 1] 2025년 국립공원공단 재난관리 사업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 업 명	사업기간	소요예산
국립공원공단출연		34,501
- 재난예경보시설운영 (탐방안전CCTV, 통제시스템, 실시간경보시스템)	‘25.1.~12.	4,455
- 산불예방 및 진화시설 확충	‘25.1.~12.	4,972
- 국립공원구조대 운영	‘25.1.~12.	399
- 방재장비 및 물자구입	‘25.1.~12.	1,061
- 탐방안전프로그램 운영	‘25.1.~12.	309
- 재난취약지구 관리	‘25.1.~12.	3,160
- 산악안전교육원 운영	‘25.1.~12.	77
- 헬기운영	‘25.1.~12.	1,668
- 헬기도입(2대)	‘25.~’27.	18,400

자료: 환경부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